

기니비사우 (Guinea-Bissau)

◎ 주요 사항

구 분	2019 (신규 조사국)
사회보험 적용대상	자영자 당연적용 및 임시근무 외국인 임의적용
보험료율 (가입자 / 사용자 / 자영자)	8% / 14% / 5~10%
보험료 부과 하한 / 상한 소득	없음
연금수급 요건	60세, 납부기간 10년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80%
일시금	가입자 및 사용자의 노령, 장애, 유족 보험료 납부 총액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4년(공무원); 1960(산업 및 상업부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)
- 현행법 : 1986년(사회보험), 2007(사회보험체계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민간부문근로자(임시직, 견습생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); 자영자(장제비 관련 임의적용)
- 임의적용 : 기존 당연적용 대상 및 기니비사우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
- 특별제도 : 공무원 및 공공부문근로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소득의 8%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·하한소득 기준 없음
 -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는 현금 질병 및 의료급여의 재원으로도 사용됨

- 자영자 : 가입 범위에 따라 월 신고소득의 5~10%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·하한소득 기준 없음
 - 자영자는 장제비 및 의료급여 재원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선택 가능
- 사용자 : 임금지급액의 14%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·하한소득 기준 없음
 - 사용자의 납입 보험료는 현금 질병 및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정부 :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보험료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며 60세 도달
 - 특정조건 충족 시 근로 지속 가능
 - 노령청산금
 - 보험료납부기간 10년 미만이며 60세 도달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보험료납부기간 10년 이상, 정상퇴직연령 미만이며 최소 50% 이상의 소득활동능력 상실 판정
 - 의료위원회가 소득활동능력 상실 정도를 판정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장애청산금
 - 보험료납부기간 10년 미만, 정상퇴직연령 미만이며 최소 50% 이상의 소득활동능력 상실 판정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
 - 수급가능 유족은 60세 이상의 배우자 (실업상태, 수급권 있는 유족 자녀 양육 중 또는 25% 이상 소득활동능력 상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및 18세 미만 고아 (학생의 경우 25세 미만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
 -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재혼 시 중단됨
 - 유족청산금
 - 사망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- 수급가능 유족은 60세 이상의 배우자 (25% 이상 소득활동능력 상실의 경우 연령제한

없음) 및 18세 미만 고아 (학생의 경우 25세 미만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

- 장제비
 -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. 배우자, 자녀 또는 장제비를 부담한 자에게 급여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
 -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2% x 보험료 납부연수
 -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퇴직 전 5년간 가장 소득이 높았던 2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을 24로 나눈 금액
 - 노령연금 상한액은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80%
- 노령청산금
 -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노령, 장애 및 유족급여의 재원으로 할당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시금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급여
 -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2% x 보험료 납부연수
 -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퇴직 전 5년간 가장 소득이 높았던 2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을 24로 나눈 금액
 - 장애연금 상한액은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80%
- 장애청산금
 -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노령, 장애 및 유족급여의 재원으로 할당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시금 지급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던 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연금액의 50%가 지급되며, 유족인 배우자가 1)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평생 지급, 2) 60세 미만이며 실업 상태일 경우 12개월간 지급, 3) 60세 미만이며 근로중일 경우 6개월간 지급
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던 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1명의 수급권 있는 고아에게 20%, 2명에게 30%, 3명에게 40% 또는 4명 이상에게 50% 지급
- 유족청산금
 -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노령, 장애 및 유족급여의 재원으로 할당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시금 지급

- 장제비
 - 사망자의 3개월 치 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공공행정부(Ministry of Labor and Public Administration)
 - 전반적인 관리·감독

- 국가사회보장청(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)
 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<http://www.inpsgb.com>

<2019년 ISSA 자료>